

『奎章全韻』을 통해서 본 正祖朝의 書籍 頒賜와 그 規模 The Distribution and Scale of Book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as 『Kyujangjeonun』

辛 承 云(Shin, Seung-Woon)*

<목 차>

- | | |
|---------------------------|---------------|
| I. 緒論 | 2. 頒賜對象 |
| II. 書籍 頒賜의 節次 | 3. 頒賜의 規模 |
| III. 『奎章全韻』의 頒賜 對象 과 그 規模 | IV. 刊印 參與者 論賞 |
| 1. 頒賜敎書의 頒布 | V. 結論 |

초 록

조선시대의 서적의 출판과 그 유통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고 간행하여 제한된 신분의 신료에게 배포하는 소위 頒賜本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국왕이 頒賜하는 頒賜本이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관료·學人들이 새로운 서적을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제도였기에 서적의 반사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지식의 습득에서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書籍流通의 문제는 書誌學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유통에 관한 자료가 극히 희소한 관계로 종래에는 現存本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主流을 차지하였다. 頒賜本의 연구도 그 중의 일환이었다.

正祖의 부단한 관심과 지원하에 李德懋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고 여러 신료들의 교정을 거쳐 정조 20년 (1796)에 반사된 『奎章全韻』의 頒賜記는 그 受賜 대상자가 방대하고 또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선후기의 서적 頒賜의 대상과 그 규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는 『奎章全韻』의 반사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책을 頒賜 받은 賦額書院의 분포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주제어 : 奎章全韻, 正祖, 頒賜本

Abstract

The best way of getting knowledge is reading in the Cho-sun dynasty, so getting books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to the scholars.

The most important way of getting books for scholars in Cho-sun dynasty is taking Bansabon published and given to scholars by government. but there is few data and few concrete studies of it.

This study deals with the object and the scale of distribution of books on the basis of Bansagi ; king Jeong-jo published 『Kyujangjeonun』, distributed about 1,500 volumes to scholars and government agencies.

Key Words : kyujangjeonun, jeong-jo, bansabon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ss0311@skku.edu)

· 접수일 : 2004. 10. 19 · 최초심사일 : 2004. 10. 25 · 최종심사일 : 2004. 11. 10

I. 緒論

『奎章全韻』의 정식 명칭은 『御定奎章全韻』이다. 御定이라는 서명의 冠稱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正祖의 관심과 지원으로 編刊되어 頒行된 韻書로서, 조선후기 韵書 중에서 代表的인 것이다. 茶山 정약용은 이 책을 평하여 ‘韻書의 絶品’이라고 까지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는데,¹⁾ 이 책이 갖는 이러한 학술적·문화적 비중에 비추어 일찍부터 學人們에 의하여 연구·소개되었다.²⁾

그간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奎章全韻』은 正祖 16년(1792) 3월에 徐榮輔·南公轍·李家煥·李書九·李德懋·柳得恭·朴齊家·成大中에게 科場에 頒行되고 있는 韵書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너무 번다하거나 너무 간략하지 않은 韵書를 편찬하라는 정조의 지시가 있으며 본격적으로 편집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韵書의 편찬을 담당한 이는 檢書官 李德懋였다. 이 책은 이덕무가 정리하고 있던 원고를 토대로 한 것인 점에서 몇몇 교정자들의 조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거의 이덕무 혼자서 편찬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교정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인 정조 17년 정월에 이덕무가 작고하자, 정조는 이 운서의 교정작업을 그의 아우인 李功懋와 아들 光葵에게 교정하도록 지시하였고, 光葵가 脱喪하자 檢書官으로 特差하고 『奎章全韻』의 開板을 주관하도록 하니, 이해 8월에 板刻을 완료하여 鑄字所에 올렸다.³⁾ 이 때 板刻해 올린 冊版은 『御定奎章全韻』大板 92판과 小板 92판이었다.⁴⁾ 이어서 이듬해인 병진년(1796) 4월에 인쇄에 착수하여 7월에 인쇄를 마치고, 진상하였는데, 이해 8월 11일에 와서 頒賜하였다.

韻書의 연구는 필자의 연구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奎章全韻』의 내용에 대하여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그간의 『奎章全韻』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인쇄가 끝난 뒤의 『奎章全韻』이 어떻게 배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적의 반사 節次와 頒賜印 등에 대해서는 그간 現傳本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⁵⁾

1) 丁若鏞, 貞軒墓誌銘(與猶堂全書 詩文集 卷15)：“御定奎章全韻 精核之書也 韓致齋隨使赴燕。燕京游上見之 懇乞相贈 蓋韻書之絕品也。”

2) 『奎章全韻』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와 板本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姜信汎, “韓國韻書研究：三韻聲彙와 奎章全韻을 중심으로,” 成大文學, 제15·16輯(1970).

정경일, 奎章全韻 研究(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4).

김순희, 奎章全韻의 書誌學的研究(서울, 상명여대대학원, 1988).

3) 李光葵撰, 國譯青莊館年譜(국역청장관전서 제XII), 辛承云譯(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1).

4) 校書館, 鑄字所應行節目. 冊版條.

5) 國王이 下賜한 책에 대한 지칭은 종래의 연구에서 內賜本과 頒賜本의 두 용어가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年月과 대상자·頒賜書籍 및 謝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록에 대한 지칭은 모두 內賜記로 불리어 왔다.

中村榮孝, “朝鮮官版の 內賜記と 國王印に 就いて,” 朝鮮學報, 25(朝鮮學會, 1962).

그러나 책이 인쇄된 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의 서적이 얼마만큼 반사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書誌學의 연구에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자료의 부족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필자는 이번에 규장각의 日記인 『內閣日曆』에서 『奎章全韻』의 頒賜 관련 자료를 찾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필자가 正祖時代에 編纂·刊行된 書籍의 解題目錄인 『羣書標記』를 譯註하고 나서,⁶⁾ 이 책에 수록된 도서의 頒行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던 중에 얻은 결과 중의 하나이다.

이 글의 전개는 論題가 書籍의 頒賜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먼저 조선시대, 특히 正祖時代의 書籍頒賜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書籍 頒賜의 節次를 살펴보고, 이어서 『奎章全韻』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이어서 『奎章全韻』의 반사에 대하여 반사대상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액서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상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지식의 습득에서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조선시대에 정부에 의하여 편찬된 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대상에 얼마나 많은 양이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관료·學人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였으며, 오늘날에도 지식의 유통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II. 書籍 頒賜의 節次

조선 前期의 자료 중에서 서적 頒賜의 절차 문제를 규정한 문헌은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은 『端宗實錄』에 보이는 다음 기사가 疏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頒賜제도에 대해 일부나마 추측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

侍講官 成三問이 經筵에서 아뢰기를, “신이 듣자니 『高麗史節要』를 頒賜할 것을 명하셨다 하는 바, 頒賜記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다시 頒賜記를 환수하여 50여인을 삭제했다 합니다. 이 책은 태종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조에 일이 끝났는데,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찍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책에 誤撰이 있어 드디어 고칠 것을 명하여서 근일에 책이 완성되었으니, 전날 사사로이 종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6-8(1969).

尹炳泰, “內賜記와 内賜印記,” 도서관학연구, 8(승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1987).

千惠鳳, “頒賜本,” 韓國民族大百科事典, 제9책(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沈喟俊, 日本에 傳存된 内賜本·内賜版式·古文書套式研究(서울 : 一志社, 1990), pp.80-139.

姜順愛, “규장각의 圖書頒賜에 대한 研究,” 書誌學報, 創刊號(1990).

安秉禧, “內賜本의 한 研究,” 藏書閣(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6) 辛承云, 國譯羣書標記(국역홍재전서 제18집)(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00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이를 바친 사람은 다 頒賜 받을 만합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50여 인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종 때에 있어서는 모든 책을 반드시 널리 배포하고, 진실로 부족함이 있으면 内藏 할 것이라도 반드시 모두 頒賜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책이 부족하다면 다시 명하여 더 쳐어서 널리 배포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⁷⁾

이상의 기사는『高麗史節要』의 頒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를 정리하면 반사대상이 결정되어 受賜者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頒賜記가 외부에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임금이 다시 頒賜記를 환수하여 50여 명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적의 頒賜에는 반사 받을 전체 대상자의 이름을 列錄한 頒賜記를 반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頒賜記의 작성은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행하여졌음이 肅宗朝에 반사한『璿源譜略』을 수정하기 위하여 회수한 후 되돌려 받지 못한 左副承旨 李箕鎮이 承政院에 보관하고 있는 頒賜記의 조사를 요구한 사실에서 확인된다.⁸⁾

正祖朝의 서적 頒賜에 관한 절차는『奎章閣志』에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먼저 현재 남아있는『奎章閣志』의 初草本과 再草本 및 확정 刊印本에 보이는 반사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책을 인쇄한 뒤에 몇 건을 奉安하고(奎章閣, 西庫, 五處史庫 奉安本) 몇 건을 進獻하며 몇 건을 頒賜할 것인지 稟定을 받되, 頒賜本의 경우는 檢書官이 분담하여 命除謝恩을 쓰고 각신이 署名하고 卷首에 安寶한다. 서울에 있는 신하는 모두 본원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되,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지방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는 각리가 가지고 가서 전하거나 騎撥 편에 下送한다.⁹⁾

② 편찬한 책을 인쇄한 뒤에는 摘文院에서 반사할 朝臣의 직성명을 列書하여 入啓한 뒤에

7) 實錄廳,『魯山君日記』卷7 端宗 元年 癸酉 七月丁丑條 “侍講官成三問於經筵啓曰 臣聞命頒高麗史節要 登名頒賜記者 皆已知之 昨日 還收頒賜記 削其五十餘人 此書自太宗朝始撰 至世宗朝功訖 許印私印 以書有誤撰 遂命改之 近日書成 前日納私紙者 並擬受賜 雖一人不可誣也 况五十餘人之多乎 在世宗時 凡書冊必廣布 苟有不足 雖應內藏者 必并頒之 今若不足 則更命加印廣布 可也 不從”

8) 承政院,『承政院日記』英祖 元年 5月16日(癸丑)條의 “李箕鎮啓曰, 璿源譜略 臣於肅廟朝, 以忝居近侍之故 有恩賜之本矣 仙馭賓天之後 泣弓之痛 只寓於受賜之物 擬將抱持終身矣 頃年, 自本州, 以有上司關文, 督令還納, 不得不封裹送上 其時 聞有釐改事 既改之後 似當還給 而終無消息 不勝訝惑而無緣探問矣 入朝之後 始招宗親府吏問之 則謂以前來誣獄被殺人姓名見載之故 舊本則盡爲洗草 今無可推之路云 其後聞之 則非特臣也 受賜諸臣 無不見失 卽今登筵之人 亦必有如此者矣 其所謂死於逆獄者 今既伸雪無餘 更無可言 而設令果是罪死者 改正之後 所當推給其人 而先朝恩賜之物 空然還奪 仍不知去處 豈有如此可駭之事乎 其時頒賜記 想必見存於政院 考出則可知 而事係恩賜者 有不敢仰請 自上下詢筵中而處之 何如…”참조. 이 글은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頒賜記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9) 奎章閣,『奎章閣志』(刊本),卷1 刊印條 “印書之後 奉安幾本-奎章閣, · 西庫 · 五處史庫奉安之本 進獻幾本 頒賜幾本 亦爲稟定 而頒賜本 則使檢書官 分書命除謝恩 閣臣署名安寶卷首 在京諸臣 皆令親受本院-有閣吏賚傳之命則否 在外諸臣 或閣吏賚傳 或騎撥下送”

閣臣이 司卷을 보내어 낙점을 받고 堂上官이 典寶를 보내어 同文之寶를 내주도록 요청한 다음, 제1권의 앞머리에 “某年月日 宣賜某官某某書某件 命除謝恩 提學或直提學 臣姓押”이라 쓴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版의 첫 번째 줄에 한 글자 높이를 낮추어 同文之寶를 찍어서 반사한다.¹⁰⁾

③ 御製를 인쇄한 다음에는 諸臣의 반사에 대한 범위를 먼저 稟議하여 결정하고 나서, 즉시 마땅히 반사 받아야할 사람의 성명을 列書하여 주상의 재가를 받은 뒤에 수호를 맞추어 <조정한> 다음 반사한다. 의례 “命除謝恩”이라 쓰고 각신이 着啣한 다음 奎章之寶를 주상께 청하여 받아다가 卷端에 찍는다. 서울에 있는 신하는 모두 본원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되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지방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는 각리가 가지고 가서 전할 것인지 騎撥 편에 下送할 것인지를 稟旨를 받아서 한다.¹¹⁾

위의 세 인용문은 정조의 御定書인 『奎章閣志』가 5, 6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을 본 관계로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初草本과 再草本·完成本이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각 본마다 지어진 시기가 다르므로 草本인 경우라도 일정부분 당시의 實情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간추려서 정리해보면 서적의 인쇄가 완료된 다음 반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 먼저 頒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품정한다.(再草本).
- 奉安件·進獻件·頒賜件 별로 소요되는 건수를 稟定한다.(刊本).
- 책을 인쇄한 뒤에는 摘文院에서 반사할 朝臣의 職姓名을 列書하여 入啓한 뒤에 閣臣이 司卷을 보내어 낙점을 받는다.(初草本).
- 마땅히 반사 받아야할 사람의 성명을 列書하여 주상의 재가를 받은 뒤에 수호를 맞춘다.(再草本).
- 의례 命除謝恩이라 쓰고 閣臣이 着啣한다.(再草本).
- 頒賜本의 경우는 檢書官이 분담하여 命除謝恩을 쓴다.(刊本).
- 제 1권의 앞머리에 “某年月日 宣賜某官某某書某件 命除謝恩 提學或直提學 臣姓押”이라 쓴다.(初草本)
- 각신이 着啣한다.(再草本).
- 각신이 署名하고 卷首에 安寶한다.(刊本).

10) 奎章閣, 『奎章閣志』(初草本) 下篇 頒書條. 凡編書印書之後 自摘文院 列書頒賜朝臣之職姓名入啓(後閣臣使司卷)受點後 堂上使典寶稟請同文之寶 遂卽其第一卷端 題曰 某年月日 宣賜某官某某書某件 命除謝恩 提學或直提學 臣姓押 乃於初板第一行低一字 以同文之寶 為之鈐識以頒之

11) 『奎章閣志』(再草本) 卷之 - 編次第五 頒賜條 “御製印出後 諸臣頒賜闊狹 先為稟定 遂卽列書當受賜者姓名啓下後 照數頒賜 依例書命除謝恩 閣臣着啣 請出奎章之寶 安于卷端 在京諸臣 皆令進本院親受(或有閣史費傳之命則否) 在外諸臣 或閣史費傳 或騎撥下送 稟旨為之”

- 堂上官이 典寶를 보내어 同文之寶를 내주도록 요청한다.(初草本).
- 첫 째 版의 첫 째 줄에 한 글자 높이를 낮추어 同文之寶를 찍어서 반사한다.(初草本).
- 서울에 있는 신하는 모두 本院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되, 閣吏가 가지고가서 전하라는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지방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는 각리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거나 騎撥 편에 下送한다.(刊本·再草本).

장황한 감이 있지만 이를 다시 풀어서 써보면, 조선시대 특히 정조조의 서적 반사 절차의 큰 틀을 짐작할 수가 있다. 즉,

첫째. 인쇄된 책은 内閣의 直院인 摘文院에서 반사해야 할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朝臣의 職姓名을 열서한 자료를 만들어서 司卷(閣屬官)을 통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 이 단계에서 奉安件·進獻件·頒賜件 별로 수요 부수가 확정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 앞에서 언급한 頒賜記이다.

둘째. 이렇게 頒賜記가 확정되면 檢書官은 나누어서 第1卷의 앞머리에 “頒賜한 연월일, 받을 사람의 직함·성명, 書名, 책의 부수, 謝恩을 면제한다는 말, 반사업무를 맡은 관리의 姓과 手決의 순으로 표시한다.¹²⁾

『奎章全韻』의 반사기에는 이 작업을 맡은 사람을 命除를 쓴 사람이라는 뜻에서 ‘命除 書寫人’이라 하였다. 命除謝恩을 줄여서 ‘命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왕명에 의하여 謝恩을 면제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命除라는 용어는 책을 받는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전하는 책 가운데서 史庫나 各司에 내린 奉安本에 기록된 소위 内賜記에는 命除謝恩이라는 文句가 들어 있지 않다.¹³⁾

세째. 命除의 書寫가 끝나면 閣臣은 着唧하고 해당하는 御寶 즉 同文之寶 또는 奎章之寶를 請出하여 첫 번째 版의 첫 번째 줄에 한 글자 높이를 낮추어 御寶를 찍어서 반사한다.

넷째. 책의 전달방법은 서울에 있는 신하는 모두 本院에 와서 직접 수령하고, 지방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는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거나 騎撥 편에 下送한다. 다만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명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전달한다.

12) 실제 頒賜된 頒賜本의 命除에는 宣賜가 内賜로 되어 있다.

13) 실제 頒賜된 頒賜本의 命除에는 宣賜가 内賜로 되어 있다.

III. 『奎章全韻』의 頒賜 對象과 그 規模

1. 頒賜敎書의 頒布

『奎章全韻』의 반사와 施行을 알려주는 공식적인 자료는 정조가 내린 頒行敎書이다. 이 교서는 『正祖實錄』에 收載되어 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韻書는 三韻을 한 곳에 모으고 入聲을 따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韵이 四聲에 근본한다 는 뜻에 어긋난다. 增韻과 入聲字를 押韻에 쓰지 아니하고 科舉場에서 增補字를 韵에 쓰지 않는 것도 通韻과 叶音의 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너무도 엉성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널리 典據를 찾아 고증하여 이 책을 편집하도록 명한 것이다. 차후로 公私간에 押韻할 때에 入聲字에 미치면 이 운서의 義例를 式樣에 준하여 취급도록 하고, 이 일을 서울과 지방의 시험을 관장하는 관사에 분부하도록 하라.

나의 苦心은 俗習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있으니 [在於矯俗正習], 이 책을 편집한 것이 어찌 음성을 조화롭게 쓰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겠는가. 바로 아첨과 거짓을 일삼는 못된 습속 [諂偽之陋] 을 한번 씻어내 보려는 것이다.

근년의 印本 서책에 御諱를 刪畫하는 것은 보기에 매우 놀랍다. 여러 차례 고치도록 지시하였는데 즉시 옛날대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글자의 音이 御諱와 같은 것까지도 중간에 아울러 避諱하고 그대로 담습하여 교정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닌 것이 없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습속은 일체 엄금하고, 韵書는 오늘부터 科試에 쓰도록 하라.¹⁴⁾

이 교서에서 우리는 운서의 편찬과 頒行의 주요한 목적이 누차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刪畫避諱 등을 통한 諂偽의陋習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소위 矯俗正習에 주요한 의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서는 정조의 문집에도 수록되었는데, 편집과정에서 筆削을 거친 것인지 실록 기사에 비하여 간략하고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¹⁵⁾ 아무튼 『奎章全韻』의 반사와 관련된 『正祖實錄』의 기사는 여기서 끝난다. 내려준다는 頒賜敎書만 있을 뿐 총 몇 질의 책을 누구누구에게 몇 책씩을 내려준다는 실질적 내용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14) 『正祖實錄』 卷45(第16,17版). 正祖 20年 8月 癸未條, “頒賜御正奎章全韻于中外 教曰 我東韻書之彙以三韻 別置入聲 有非韻本四聲之意 而不押增韻與入聲 科場不押增補 亦不曉通韻叶音之格 魯莽莫甚 所以博據廣証 命編是書者也 此後公私押韻 字及入聲 準此韻書義例式令事 分付京外掌試之司 卽予苦心 在於矯俗正習 是書之編 豈特專爲諧音比聲 政欲一洗諂偽之陋 近年印本書冊 御諱之刪畫 所見甚駭然屢勤飭教 不卽復古 其至諱稱字音中間並諱之 因循而無非可以矯正之端 自今似此習俗 一體嚴禁 韵書今日爲始行用.”

15) 『弘齋全書』 卷 35 教 御定奎章全韻頒行敎 “御正奎章全韻內閣印出進呈 我東韻書之彙以三韻 別置入聲 有非韻本四聲之意 而不押增韻與入聲 亦不曉通韻叶音之格 魯莽莫甚 所以博據廣訂 命編是書者也 此後公私押韻 準此韻書義例式令 卽予苦心 在於矯俗正習 是書之編 豈特專爲諧音比聲 政欲一洗諂偽之陋 近年印本書冊 御諱之刪畫 所見甚駭然屢勤飭教 不卽復古 自今嚴禁 韵書今日爲始行用.” 文字를 増減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사본의 연구가 현존본의 조사에 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2. 頒賜對象

규장각을 설치한 정조는 규장각에서 행해진 일들을 承政院의 『承政院日記』의 예를 따라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內閣日曆』¹⁶⁾이다. 필자가 다루려는 『奎章全韻』의 頒賜記는 바로 이 『內閣日曆』에 수록되어 있는 承政院에 내린 傳敎이다. 이 교서에는 먼저 반사대상을 포괄적으로 指定하고 앞에서 검토한 내용의 교서를 싣고 있는데, 교서의 내용은 『弘齋全書』에 수재된 것과 같다.

『御定奎章全韻』을 내각에서 인쇄하여 옮렸다. 内閣·外閣·玉堂·藏書閣·尊經閣·政院·禮曹·起居注室·五處史庫·四學에 分藏하고, 時原任大臣과 閣臣·卿宰·侍從과 各邑의 鄉校 및 賦額書院에 分頒하라.¹⁷⁾

이 교서에서 보면, 본 서의 반사대상이 내각인 奎章閣과 외각인 校書館·홍문관·藏書閣·尊經閣·政院·禮曹·起居注室·五處史庫·四學에 分藏하는 件과, 閣臣·卿宰·侍從과 교육기관인 各邑의 鄉校와 賦額書院에 分頒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나누어보면 국가의 학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과 教育機關 및 圖書館·史庫 등 공적인 기관과 時任과 原任 대신과 고급관료 및 侍從臣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언급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다행히도 頒賜記에는 대상에 따라 四都八道鄉校秩·賦額書院秩·各司上·四都八道營上秩·朝臣頒賜秩로 나누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반사 대상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반사된 부수는 전체 1,484건에서 鄉校와 賦額書院 및 各司上 등 공공적인 반사가 678건이고 朝臣들 개인에게 반사한 것이 806건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嶺壯紙·完壯紙·卷冊紙 등 질이 좋은 종이에 인쇄한 책들은 奎章閣을 비롯한 各司上·四都八道營上에 奉安 또는 分藏하였고, 개인에게 반사한 경우는 책을 편간하는데 직접 간여한 閣臣이나 檢書官, 校正堂上 등에게 그 일부가 반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고의 집필의도에 맞추어 각 반사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奎章閣의 일기로 쓰여진 이 『內閣日曆』은 모두 1245책의 거질로서 현재 奎章閣圖書로 전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규장각의 업무와 관련된 매우 규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장각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

17) 奎章閣, 『內閣日曆』正祖 21年 丙辰八月11日癸未條 : “御定奎章全韻 內閣印出進呈 內外閣·玉堂·藏書閣·尊經閣·政院·禮曹起居注室·五處史庫·四學分藏 而時原任大臣·閣臣·卿宰·侍從·各邑鄉校·賦額書院分頒”

가. 四都·八道 繩校秩

당시 전국에 설치된 향교에 分藏한 것으로 水原·開城·江華·廣州의 네 곳의 留守府 와 8道의 州縣 소재 향교가 그 대상이다. 도별로는 京畿 34官·忠淸道 54官·全羅道 56官·慶尙道 71官·黃海道 23官·江原道 26官·咸鏡道 24官·平安道 42官으로 4都를 합하여 모두 334官에 각기 白紙로 찍은 大本 1건이 분장되었다. 이 숫자는 당시 법전인 『大典通編』에 기술된 四都·八道에 分屬된 州縣의 수와 같으나 전국의 모든 고을에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正祖 22년 戊午年(1798) 12월에 頒賜한 『勸農政求農書論音』에도 330 州縣이라는 내용이 있다.

나. 賦額書院秩

서원에 서책을 반사한 것은 조선 明宗 5년에 반사한 백운동서원이 처음이다.¹⁸⁾ 이후로 학문의 장려를 위하여 賦額書院에 서책을 반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원에 어느 규모로 반사하였는지는 자료의 미비로 연구된 것이 없다. 한 두 서원에 한하여 서적반사에 대한 기록이 일부 보이지만 『奎章全韻』의 반사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 頒賜秩에는 4都 8道로 나누어 263개소의 賦額받은 廟祠와 書院이 열거되어 있다. 좀 장황한 감이 있지만 드문 경우이므로 賦額書院秩에 따라 반사내역을 4都와 8道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四都

四都是 開城府·江華府·廣州府·水原府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시대에 지방의 일반행정 조직인 州·府·郡·縣과는 별도로 수도인 漢城의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留守府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전기부터 유수부를 두었던 開城府 이외에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江華府와 廣州府를 두었고, 正祖는 1789년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고 이어서 1793년에는 수원에 유수부를 두었다. 四都에 『奎章全韻』을 반사 받은 서원은 水原府의 梅谷書院과 開城府의 崇陽書院·崇節書院·五冠書院·花谷書院·表節祠·道山書院, 江華府의 忠烈祠, 그리고 廣州府의 明阜書院·龜巖書院·壽谷書院·顯節祠로서 4개 지역에 모두 12개 서원이다. 이들 서원은 각기 白紙로 찍은 『奎章全韻』 1부를 반사 받았다.

② 京畿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正祖朝에 京畿에는 驪州·坡州·楊洲의 牧과 富平·南陽·利川·仁川·長湍·通津·喬洞·竹山·豐德의 9개 都護府, 楊根·安山·朔寧·安城·麻田·高陽·金浦·

18) 實錄廳, 『明宗實錄』 卷10 明宗 5년 2월 丙午, 同 5월 丁卯條.

交河·加平의 9개 郡, 龍仁·振威·陽川·永平·砥平·抱川·積城·果川·漣川·陰竹·陽城·陽智·始興의 13개 縣으로 모두 34개 고을이 있었다.¹⁹⁾『奎章全韻』을 반사받은 서원은 楊州 등 21개 지역에 33개의 서원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京畿지역 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楊州	道峯書院·石室書院·淸節祠·旌節祠	驪州	沂川書院·孤山書院·大老祠
坡州	坡山書院·紫雲書院·豐溪祠	長端	臨江書院
豊德	龜巖書院	仁川	鶴山書院
南陽	龍栢祠·安谷祠	金浦	牛渚書院
安城	道基書院	交河	新谷書院
高陽	文峯書院	麻田	湄江書院
加平	潛谷書院	龍仁	忠烈書院·深谷書院
永平	玉屏書院	砥平	雲溪書院
抱川	花山書院·龍淵書院	始興	忠賢書院
果川	愍節書院·鷺江書院·四忠書院	陽城	德峯書院
漣川	臨漳書院		

<표 1>에서 보면 楊州·麗州·坡州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하여 富平·利川·通津·喬洞·竹山의 5개 都護府와 楊根·安山·朔寧·交河의 4개 郡과 振威·陽川·積城·陰竹·陽智의 5개 현 등 모두 14개 고을에는 반사 받은 서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忠淸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정조조에 忠淸道에는 忠州·淸州·公州·洪州의 4牧과 清風도호부의 1개 도호부, 林川·丹陽·泰安·韓山·舒川·泗川·天安·瑞山·槐山·沃川·溫陽·大興의 12개 郡 및 文義·鴻山·堤川·平澤·稷山·懷仁·定山·青陽·延豐·陰城·淸安·恩津·懷德·鎮岑·連山·尼城·扶餘·石城·庇仁·藍浦·鎮川·結城·保寧·海美·唐津·新昌·禮山·木川·全義·燕岐·永春·永同·黃潤·青山·牙山·報恩·德山의 37개 縣 등 모두 54개 고을이 있었다. 이 중에서 반사대상이 된 서원은 <표 2>와 같이 모두 26개 고을에 38개 서원이다.

19) 道別 屬縣의 숫자는 正祖 9년(1785)에 편찬한 『大典通編』을 기초로 하고 편찬 이후에 邑縣의 升降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하 모두 같다.

<표 2> 忠淸道지역 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淸州	莘巷書院 · 華陽書院 · 表忠祠	忠州	八峯書院 · 雲谷書院 · 樓巖書院 · 忠烈祠
公州	忠賢書院 · 滄江書院	洪州	魯恩書院 · 惠學書院
淸風	鳳崗書院 · 黃江書院	韓山	文獻書院
沃川	表忠祠	丹陽	丹巖書院
舒川	建巖書院	林川	七山書院
瑞山	聖巖書院	文義	魯峯書院 · 黔潭書院
報恩	象賢書院	懷德	崇賢書院
扶餘	浮山書院 · 義烈祠	鎮川	百源書院 · 芝山書院
鴻山	淸逸書院 · 彰烈書院	保寧	花巖書院
連山	遜巖書院	木川	道東書院
燕岐	鳳巖書院	平澤	褒義祠
尼城	魯崗書院	禮山	德岑書院
黃潤	寒泉書院	牙山	顯忠祠

<표 2>에서 보면 반사 받은 서원은 忠州에 4개 처,淸州에 3개 처가 있고, 公주 · 洪州 · 청풍 · 문의 · 부여 · 진천 · 홍산에 각기 2개 처가 반사 받았다. 나머지 17개 지역은 각기 1개 곳씩 반사 받았다. 이에 비하여 반사 받은 서원이 하나도 없는 곳은 泰安 · 沔川 · 天安 · 槐山 · 溫陽 · 大興의 6개 郡과 堤川 · 穂山 · 懷仁 · 定山 · 靑陽 · 延豐 · 陰城 · 淸安 · 恩津 · 鎮岑 · 石城 · 庇仁 · 藍浦 · 結城 · 海美 · 唐津 · 新昌 · 全義 · 永春 · 永同 · 靑山 · 德山의 28개 고을이다.

④ 全羅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정조조에 全羅道에는 全州府와 羅州 · 濟州 · 光州 · 綾州의 4牧, 南原 · 長興 · 順天 · 潭陽 · 磨山 · 長城 · 茂朱의 7개 도호부, 寶城 · 益山 · 古阜 · 靈巖 · 靈光 · 珍島 · 樂安 · 淳昌 · 錦山 · 珍山 · 金堤의 11개 郡, 그리고 昌平 · 龍潭 · 臨陂 · 萬頃 · 金溝 · 光陽 · 龍安 · 咸悅 · 扶安 · 咸平 · 康津 · 玉果 · 高山 · 泰仁 · 沃溝 · 南平 · 興德 · 井邑 · 高敞 · 茂長 · 務安 · 求禮 · 谷城 · 雲峯 · 任實 · 長水 · 鎮安 · 同福 · 和順 · 興陽 · 海南 · 大靜 · 旌義의 33개 縣 등 모두 56개 고을이 있었다. 이 56개 고을 중 서적을 반사 받은 사액서원은 全州 등 27개 지역의 47개 서원으로 지역별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全羅道지역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全州	華山書院	羅州	景賢書院·月井書院·潘溪書院·旌烈祠
綾州	竹樹書院·褒忠祠	光州	月峯書院·褒忠祠·義烈祠
濟州	橘林書院·三姓祠	順天	玉川書院·忠愍祠·旌忠祠
南原	滄州書院·寧川書院·露峯書院·忠烈祠·愍忠祠	長城	筆巖書院
潭陽	義巖書院	礪山	竹林書院
長興	淵谷書院·江城書院·忠烈祠	寶城	龍山書院·大溪書院·旌忠祠
錦山	星谷書院·從容祠	靈巖	鹿洞書院·忠節祠
古阜	旌忠祠	益山	華山書院
臨陂	鳳巖書院	龍潭	三川書院
昌平	松江書院	泰仁	南臯書院·武城書院
興陽	雙忠祠	谷城	陽德祠
茂長	忠賢祠	務安	松林書院
南平	蓬山書院	同福	道源書院
井邑	考巖書院		

<표 3>에서 보면 전라도에서 규장전운을 반사 받은 서원은 남원이 5개 처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나주가 4개 처, 광주·순천·장흥·보성이 3개 처, 능주·금산·영암·태인이 각기 2개 처이고 나머지 15개 지역은 각기 1개 처가 반사 받았다. 반사 받은 서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靈光·珍島·樂安·淳昌·珍山·金堤·萬頃·金溝·光陽·龍安·咸悅·扶安·咸平·康津·玉果·高山·沃溝·興德·高敞·求禮·雲峯·任實·長水·鎮安·和順·海南·大靜·旌義 등이다.

⑤ 慶尙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정조조에 慶尙道에는 慶州府와 安東·昌原大都護府 등 대도호부 2 곳, 尙州·晉州·星州의 3개 牧, 大丘·金海·寧海·密陽·善山·青松·蔚山·東萊·巨濟·居昌·河東·仁同·順興·漆谷·咸陽의 15개 도호부, 陝川·草溪·淸道·永川·醴泉·榮川·興海·梁山·咸安·金山·豐基·昆陽의 12개 郡, 그리고 益德·慶山·固城·義城·南海·開寧·三嘉·宜寧·河陽·龍宮·奉化·淸河·彥陽·漆原·鎮海·眞寶·聞慶·咸昌·知禮·安義·高靈·玄風·山青·丹城·軍威·比安·義興·新寧·禮安·延日·長鬱·靈山·昌寧·泗川·機張·熊川·慈仁·英陽의 38개 현 등 모두 71개 고을이었다. 이 가운데 서적을 반사 받은 고을은 경주를 비롯한 41개 고을에 모두 49개 서원으로서 그 지역별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慶尙道지역奎章全韻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慶州	西岳書院·玉山書院·崇烈祠	安東	虎溪書院·三溪書院·周溪書院·西礪祠
尚州	道南書院·興巖書院·白玉洞書院	星州	川谷書院·檜淵書院·忠節祠
晉州	德川書院·新塘書院·殷烈祠·忠愍祠·彰烈祠	居昌	道山書院·浣溪書院·褒忠祠
順興	紹修書院	大邱	研經書院·洛濱書院·表忠祠
密陽	禮林書院·表忠祠	善山	金烏書院·尙義書院·洛峯書院
仁同	吳山書院·東洛書院	金海	新山書院
東萊	安樂書院	蔚山	鷗江書院
青松	屏巖書院	咸陽	濫溪書院·滄洲書院
永川	臨臯書院·道岑書院	清道	紫溪書院
榮川	伊山書院·龜山精舍	咸安	西山書院
陝川	伊淵書院·華巖書院	醴泉	鼎山書院
梁山	松潭書院	義城	水溪書院
固城	忠烈祠	南海	忠烈祠
宜寧	德谷書院	禮安	易東書院·陶山書院
安義	龍門書院·黃巖祠	延日	烏川書院
昌寧	冠山書院	眞寶	鳳覽書院
三嘉	龍巖書院	漆原	德淵書院
丹城	道泉書院	玄風	道東書院·禮淵書院
山淸	西溪書院	英陽	英山書院
開寧	德林書院	泗川	龜溪書院
奉化	文巖書院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 지역에서『奎章全韻』을 반사 받은 사액서원은 진주가 5개 처로 가장 많고, 다음이 4 개 처가 반사 받은 안동이고, 상주·성주·대구·선산·거창은 각 3개 처의 서원이 서적을 반사 받았다. 이어서 밀양·안동·함양·永川·합천·예안·현풍은 2개 처의 서원이 반사 받아서 경상도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학적 기반이 강한 지역임을 보여 준다. 이외에 한 곳 씩의 서원이 반사 받은 지역은 順興 등 17개 지역이다. 끝으로 한 곳도 사액서원이 없는 지역으로는 경상도 71개 고을 중에서 昌原·寧海·巨濟·河東·漆谷·草溪·興海·金山·豐基·昆陽·盈德·慶山·河陽·龍宮·淸河·彥陽·鎮海·聞慶·咸昌·知禮·高靈·軍威·比安·義興·新寧·長鬱·靈山·機長·熊川·慈仁 등 30개 고을임을 보여준다.

⑥ 江原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正祖朝에 江原道는 都護府로 江陵都護府 한 개 고을, 牧은 原州 한 개 고을, 都護府는 淮陽·襄陽·春川·鐵原·三陟·寧越·伊川의 7개 고을, 郡으로 平海·通川·旌善·高城·杆城·平昌의 6개 고을, 그리고 縣으로 金城·蔚珍·歛谷·平康·金化·狼川·洪川·楊口·麟蹄·橫城·安峽의 11개 고을로 도합 26개 고을이었다. 이 가운데 서적을 반사 받은 고을

은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 26개 고을 가운데 서적을 반사 받은 서원이 있는 고을은 원주·강릉·춘천·철원·영월·금화의 6개 고을 뿐이며 원주의 3개 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1개 처 뿐이다. 반사 받은 서원이 한 곳도 없는 고을이 회양·양양 등 20개 고을이다. 이러한 사실은 강원도가 유학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표 5> 江原道지역 奎章全韻 頒賜書院

지 역	書院名	지 역	書院名
江陵	松潭書院	原州	七峯書院·陶川書院·忠烈祠
春川	文巖書院	鐵原	褒忠祠
寧越	彭節祠	金化	忠烈祠

⑦ 黃海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정조조에 黃海道에는 黃州와 海州의 두 곳의 牧과 延安·平山·瑞興·豐川·谷山·甕津·長淵의 都護府 7개 고을, 凤山·安岳·載寧·遂安·白川·信川·金川 등郡 7개 고을, 그리고 新溪·文化·長連·松禾·康翎·殷栗·兔山 등 縣이 7개 고을로 모두 23개 고을이었다. 이 가운데 서적의 반사를 받은 서원은 海州 등 16개 고을에 모두 23개 서원이었다. 지역별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黃海道지역 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海州	紹賢書院·文憲書院·清聖廟	黃州	白鹿洞書院
延安	飛鳳書院·顯忠祠	平山	三太師·鐵像祠·東陽書院·九峯書院
長淵	龍巖書院	瑞興	花谷書院
白川	文會書院	信川	正源書院
安岳	鷺峯書院	遂安	龍溪書院
載寧	景賢書院	鳳山	文井書院
金川	愍忠祠	文化	鳳岡書院·程溪書院
松禾	道東書院	長連	鳳陽書院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황해도는 총 23개 고을 중에서 반사 받은 16개 고을 중에서 해주와 평산이 각기 3개 처이고, 다음으로 연산과 문화 고을이 각기 2개 처씩이며 나머지 12개 고을은 모두 한 곳 씩 이어서 황해도 내에서 각 고을의 문화적 교육적 위치를 보여준다. 반사 받은 서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은 豊川·谷山·甕津·新溪·康翎·殷栗·兔山 등 7개 고을이다. 이는 황해도가 고을 수에 비하여 유학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 많은 곳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8) 咸鏡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正祖朝에 咸鏡道는 咸興府와 永興대도호부, 吉州牧, 安邊·鏡城·慶源·會寧·鍾城·穩城·慶興·富寧·北青·德源·定平·甲山·三水·端川·明川·茂山·長津 등 17개 도호부, 文川·高原 등 2개 군, 그리고 洪原·利城의 2개 현 등 모두 24개 고을이다. 이 중에서 서적의 반사를 받은 곳은 함흥 등 9개 고을에 11개 서원으로 지역별 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적의 반사를 받은 지역이 전 고을 수의 반도 안되고 사액서원수도 11개에 그치는 것은 함경도가 유학적 기반이 매우 약한 지역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7> 咸鏡道지역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咸興	文會書院·雲田書院	永興	興賢書院
吉州	溟川書院	安邊	玉洞書院
北青	老德書院	鍾城	鍾山書院
鏡城	彰烈祠	德源	龍津書院
會寧	顯忠祠		

(9) 平安道

『奎章全韻』을 반사하던 정조조에 平安道는 平壤·義州 등 2개 府와 寧邊大都護府, 安州·定州의 2개 牧, 江界·昌城·成川·朔州·肅川·龜城·中和·慈山·宣川·鐵山·龍川·楚山·三和·咸從 등 14개의 都護府, 祥原·德川·价川·嘉山·郭山·順川·熙川·碧潼·雲山·博川·渭原·寧遠 등 12개의 郡, 그리고 龍岡·永柔·餕山·三登·順安·江西·陽德·孟山·泰川·江東·殷山 등 11개의 縣 등 모두 42개의 고을을 두고 있었다. 이 중에서 서적을 반사 받은 고을은 평양을 비롯한 17개 고을의 24개 서원이며 지역별 내역은 <표 8>과 같다.

<표 8> 平安道지역奎章全韻 頒賜書院

지역	書院名	지역	書院名
平壤	龍谷書院·忠武祠·武烈祠	義州	顯忠祠·紀忠祠
寧邊	樂峯書院	安州	清川祠·忠愍祠
定州	鳳鳴書院·新安書院	江界	景賢書院
成川	鶴翊書院·雙忠祠	慈山	義烈祠
昌城	忠烈祠	宣川	義烈祠
龜城	旌功祠	熙川	象賢書院
碧潼	九峯書院	永柔	三忠祠
順安	星山書院	龍岡	鷺山書院
江西	鶴洞書院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奎章全韻』을 반사 받은 사액서원은 모두 263 개소이며, 이들 서원은 각기 白紙에 인쇄한 『奎章全韻』 大本 한 질을 반사 받았다.

『奎章全韻』을 반사 받은 사액서원의 분포는 四都가 12개소, 京畿가 21개 지역에 33개소, 忠淸道가 26개 지역에 38개소, 全羅道가 27개 지역에 47개소, 慶尙道가 41개 지역에 69개소, 江原道가 6개 지역에 8개소, 黃海道가 17개 지역에 22개소, 咸鏡道가 9개 지역에 10개소, 平安道가 17개 지역에 24개소이다. 이들 사액서원의 유형은 서원이 198개이고 祠가 63개, 廟와 精舍가 각기 1개소이다.

다. 各司上 · 四都 · 八道營上秩

文翰 · 藏書 · 學術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4都와 8道의 留守府와 監營에 分藏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鄉校나 書院에 白紙件을 반사한 것과는 달리 보다 고급으로 인쇄한 책이 반사되고 있다. 대상과 건수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各司 · 四都 · 八道營에 奉上한 奎章全韻

기관	반사 내역		기관	반사 내역	
	건수	종류		건수	종류
內閣	9	嶺壯紙 大本 6건 白紙 小本 3건	水原府	2	卷冊紙 大本 2건
藏書閣	9	嶺壯紙 大本 6건 小本 3건	開城府	1	卷冊紙 大本 1건
弘文館	6	嶺壯紙大本 3건 完壯紙 小本 3건	江華府	1	卷冊紙 大本 1건
成均館	3	嶺壯紙 大本 1건 卷冊紙 大本 1건 完壯紙 小本 1건	廣州府	1	卷冊紙 大本 1건
外奎章閣	2	卷冊紙大本1건 小本 1건	京畿監營	1	卷冊紙 大本 1건
外閣	2	嶺壯紙 大本 1건 卷冊紙 小本 1건	關東監營	1	卷冊紙 大本 1건
科試件	3	嶺壯紙 大本 3건	海西監營		卷冊紙 大本 1건
四學	8	各嶺壯紙大本1건 卷冊紙 小本 1건	嶺南監營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五處史庫	15	各嶺壯紙大本2건 完壯紙 小本 1건	湖南監營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政院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湖西監營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起居注室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北關監營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禮曹	2	卷冊紙 大本 2건	關西監營	2	卷冊紙 大本 1건 白紙 小本 1건

<표 9>에서 보면 文翰을 다루는 内閣·弘文館·起居注室·外閣과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四學, 장서기구인 藏書閣·外奎章閣·史庫, 과시험을 담당하는 禮曹, 그리고 유수부를 둔 4都와 八道의 감영에 영남 또는 全州에서 제조한 壯紙나 卷冊紙에 인쇄한 좋은 책이 반사되었고, 지방 감영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백지에 찍은 小本이 1부 더 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사 규모는 모두 30 기관에 81건이며 종류별로는 嶺壯紙 大本이 34건, 小本 3件, 完壯紙 小本 9건, 卷冊紙 大本 19건, 小本 6건, 白紙 小本이 10건이다.

라. 朝臣頒賜秩

朝臣은 먼저 奎章閣과 관련된 閣臣·新舊抄啓文臣·閣屬官의 名目으로 앞에 열거하고, 그 다음에 大臣·宗班都尉·卿宰一品·二品·堂上3품 중 반사대상인 臣僚를 열거하였다. 그 다음에는 『奎章全韻』의 校正과 命除의 작성에 동원된 인원을 韻書校正堂上別頒·命除書寫人別頒의 명목으로 들고 있어서, 반사대상을 크게 10개 부류로 분류 기술하였다. 이를 類別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閣臣

규장각의 原任과 時任 각신의 頒賜 名錄이다. 반사받은 原任은 提學 5員, 直提學 8員, 直閣 5員, 待敎 1員으로 모두 19員이고, 時任은 直提學 1員, 檢校直閣 1員, 檢校待敎 2員으로 4員이다. 時任과 原任을 합하여 23員에게 각각 白綿紙大本·白紙大本·完白紙小本의 3건씩을 頒賜하여 도합 69件이다. 大臣에게 白紙 大本 1건과 小本 1건을 반사한 것에 비추어 특별히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新舊選 抄啓文臣

抄啓文臣은 槐院에 分館된 37세 이하의 문신 중에서 선발하여 40세가 될 때까지 각종 특전을 주고 講書와 製述을 읽하도록 한 文士의 훈련을 위한 제도로서, 이에 선발되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다. 舊抄啓文臣 중에 辛丑選 11員·癸卯選 12員·甲辰選 5員·丙午選 4員·丁未選 4員·己酉選 10員·庚戌選 18員·壬子選 9員 도합 73원에 新抄啓文臣 甲寅選 27員을 합한 100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각기 白紙大本 1件과 完白紙小本 1건을 반사 받았다.

③ 閣屬官

규장각의 屬官인 閣監·司卷·檢書官·令籤·監書와 外閣인 校書館의 判官·校理·博士 등 내외각의 실무자들이다. 閣監 2員·前閣監 3員·司卷 2員·前司卷 5員 등 12員에게 각기 白紙大本

1件을 반사하였다.

檢書官은 역할에 따라 각기 반사 건수가 다르다. 4 검서중 李旭秀는 白紙大本·小本 각 1건을 반사하고, 본서의 간인의 주역을 맡은 李光葵는 白綿紙大本·白紙大本·小本 3건으로 모두 5건을 반사하였으며 元有鎮 등은 白紙大本·小本을 각각 1건 반사하였다.

兼檢書官 4원 가운데서 柳得恭은 白綿紙大本과 白紙小本을 반사 받았고, 徐理修·成海應·柳本學은 각기 白紙大本과 小本을 1건씩 반사받았다. 前檢書官인 朴齊家는 白綿紙大本·白紙小本 1건씩, 李集箕와 李蠶模는 각기 白紙大本·小本 1건을 반사 받았다. 李功懋는 이광규와 함께 본서의 교정을 맡은 관계로 白綿紙 大本·白紙 大本 각 1건과 小本 3건을 받았고, 朴宗善은 白紙大本·小本을 1건씩 받았다.

領籤 2員·前領籤 3員·監書 6 員·前監書 2員·生徒監書 2 員과 校書館判校 1 員·校理·博士 각1員 모두 18員에게 각기 白紙大本 1건을 반사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閣屬官 43員이 반사 받은 책을 합하면 白綿紙大本 4건, 白紙大本 43건, 小本 17件으로, 모두 64건이다.

④ 大臣

領議政 洪樂性과 領敦寧府事 金履素 2員에게 각각 白紙大本 1건과 小本 1건을 반사하였다. 대신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없는 것은 閣臣으로 분류되어 반사 받았기 때문이다.

⑤ 宗班都尉

英祖의 부마인 昌城尉 黃仁點을 비롯한 綾城尉 具敏和·青城尉 沈能建 등 4인과 安昌君 등 6명의 종친에 대한 頒賜記이다. 이를 10員은 각기 白紙 大本 1건을 반사 받았다.

⑥ 卿宰一品

卿宰는 東班 2품이상의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類目에는 奉朝賀 2員을 비롯하여 行職으로 判書·留守·監司·知中樞·判中樞·上護軍으로 재직하고 있는 11명 등 모두 19명의 1품 경재의 名錄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白紙로 찍은 大本 1건이 반사되었다.

⑦ 卿宰 二品

2 品職의 전현직 관리나 行職으로 3품직에 있는 관리 132명의 名錄이다. 判書·參贊·參判·監司 등의 전현직 관리들이다. 이중에는 行職으로 3품직인 대호군과 4품직인 護軍에 있는 자가 92명이며, 前職은 8명이다. 이들에게는 白紙로 찍은 大本 1건이 반사되었다.

⑧ 堂上 三品

正三品 堂上官인 前現職 관리 131명의 名錄이다. 이중에는 승지·참의·목사등과 함께 監司·부사·군수·부호군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行職과 守職을 받은 경우이다. 문반직의 부족으로 종4품 부호군을 행직으로 받은 이가 7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前職은 13명이다. 이들에게는 白紙로 찍은 大本 1건이 반사되었다. 다만 李萬運에게는 大本 이외에 白紙로 찍은 小本 1책을 加給하였다.

⑨ 玉堂東壁·亞長·陞品·當品

東壁은 회의나 연회에서 좌석에 앉을 때 동쪽에 앉는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홍문관의 경우는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를 東壁이라 한다. 이 명록에는 동벽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6명의 관리가 열거되었다.

亞長은 長官의 다음벼슬이라는 의미이다. 이 명록에는 모두 11명의 관리가 열거되었는데 5명이 前職이다.

陞品은 임금이 教旨와 같은 문서가 아닌 구두지시로 관원의 品階를 승진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승품으로 임명할 때는 현재의 품에서 1품을 올려서 임명한다. 이 명록에는 수찬·현감·교리등 10명의 관리가 열거되었는데 이중 전직은 2명이다.

當品은 일정한 품계에 있는 관원에게 그 품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이른다. 이 명록에는 좌랑·전적·교리·부사과·부사직·평사·현감 등 15명의 관리가 열거되었는데, 전직자는 5명이다.

이상의 玉堂東壁·亞長·陞品·當品에 열거된 42명의 관리에게는 각기 白紙로 인쇄한 大本 1건이 반사되었다.

⑩ 兩司亞長·納言·陞品·掌通·持正·兼春秋·蔭官

亞長은 長官의 다음 벼슬이라는 의미이다. 兩司는 司憲府와 司諫院의 합칭으로 사헌부 執義와 사간원의 司諫을 가리킨다. 사간·집의·通禮 등 18명이 열거되었는데, 이중 5명이 전직이다.

納言은 承旨의 별칭이다. 8명이 열거되었는데 3명이 전직이다.

陞品은 임금이 구두 지시로 관원의 品階를 승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승품으로 임명할 때는 현재의 품에서 1품을 올려서 임명한다. 이 명록에는 수찬·현감·교리등 10명의 관리가 열거되었는데 이중 전직은 2명이다. 부사과·부사직·경력·찰방·현감·장령·지평 등 37명이 열거되었는데, 이중 7 명이 전직이다.

掌通은 사헌부의 掌令(正4品)을 임명할 때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인데 이 후보자에 오른 이를 지칭하여 掌通이라 한다. 부사직·부사과·장령·도사 등 19명이 열거되었다.

持正은 사헌부 持平과 사간원 正言의 畝稱이다. 이 類目에는 副司果·副司直·正言·持平·正郎·判官·縣監·察訪등 정5품에서 6품의 관료 158명이 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중 前職은 22명이다. 이들은 각기 白紙로 인쇄한 奎章全韻 小本 1건을 반사 받았다.

兼春秋는 史官職의 하나로서, 중앙의 六曹·홍문관·예문관·승정원 등에 겸직으로 1명을 임명하여 당해 기관의 정무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 모두 5명이 열거되었는데 정랑과 좌랑이 4명이고 判校가 1명이다. 이들은 각기 白紙로 인쇄한 奎章全韻 小本 1건을 반사 받았다.

蔭官은 父祖의 음덕으로 임명된 관원이다. 판관(종5품)과 主簿(종6품) 각 1명이 열거되었다. 이들은 각기 白紙로 인쇄한 大本 1건이 반사되었다.

⑪ 韻書 校正堂上 別頒

『奎章全韻』의 교정에 참여한 당상관 4명에게 특별히 내린 반사로서, 李家煥은 毛面紙小本·白綿紙大本·白紙小本 각 1건을 반사하였고, 李書九는 毛面紙大本·嶺壯紙大本·白紙小本 각 1건, 李冕膺은 白紙大本과 小本 각 1건, 徐榮輔는 白綿紙大本·白紙大本·白紙小本을 각각 1건씩 반사하였다. 이는 大臣은 물론 關臣보다도 우대한 것이다.

⑫ 命除 書寫人 別頒

頒賜本에 筆書하는 頒賜文의 끝머리에 책을 반사한 데 대하여 謝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命除謝恩이라 쓰는데, 이를 줄여서 命除라 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종래의 연구에서 內賜記라고 지칭해왔으나 이 글이 내사기가 아니라 命除라고 하였음을 알려주는 실례이다.²⁰⁾ 『奎章閣志』에 의하면 命除는 檢書官이 나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奎章全韻』의 경우 숫자가 많은 관계로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이다. 명록에는 抄啓文臣으로 李書九·洪義浩·李翼晉·李相璜·金義淳·宋知濂·金履載·金近淳·徐俊輔·曹錫中·李勉昇·權峻·吳泰曾·金履永·姜浚欽·洪奭周·金熙華의 17인과 검서관 李功懋·成海應·李光葵·元有鎮·鄭柵·柳本學 등 6명, 前察訪 金基普, 검서관의 자녀들인 柳本藝·徐有殷·成憲曾·朴長穩 등 28인과 前修撰 趙元喆 등 5인을 합하여 모두 33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앞의 x28명은 禮單紙小本을 1건씩 반사하였고, 5명에게는 白紙大本 1건씩을 반사하였다.

20) 內賜記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의 寡聞한 탓인지 조선시대 기록에서 內賜記라는 어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확인한 바로는 李仁榮의 『淸芬室書目』(1944編)의 『奎章閣志』에 대한 기사에서 “奎章閣官員等撰, 內賜本. 存奎章之寶印記而佚內賜記”라고 하여 內賜本과 內賜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日帝强占期부터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淸芬室書目 462面 奎章閣志條 參照)

3. 頒賜의 規模

木板으로 판각한 도서의 경우 冊版을 보관해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이 印出되었는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奎章全韻』도 木板本이며 大本과 小本의 두 종이 있다는 점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책의 경우 다행히도 교정과 판각 및 인쇄를 담당한 李光葵가 쓴 그의 부친 李德懋의 연보에 인출 부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병진년(1796) 4월에 奎章全韻의 인쇄에 착수하여 7월 20일에 인쇄를 마쳤다. 이때 진상한 것은 모두 4,705件이었다.²¹⁾

진상한 책이 4,705건이라는 말은 인쇄를 직접 담당하여 進上한 사람이 쓴 것이니 아마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반사대상에서 보았듯이 정조가 반사한 수는 대본이 1,190건이고 소본이 294건이어서 도합 1,484건이다. 따라서 진상 받은 건수와 반사한 건수는 3,221건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 반사대상을 검토해보면 다른 서적의 반사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西庫와 王이 私用으로 쓰기 위하여 비축해두는 大內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아마도 이 숫자가 西庫와 宙合樓·大內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추측은 536건이 반사된 『朱書百選』의 경우 西庫에 250건, 大內에 139건 도합 389건을 배당하고 있는 데서 추축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한다.²²⁾

처음 반사된 이후로 수시로 시행한 각종의 應製나 課試에서 施賞하는 책자로 이 책이 이용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반사시기는 반사하는 당시의 년대가 기술되게 마련이다. 다른 책의 경우이기는 하나 실제로 인출하여 궁내에 보관해두고 반사하지 않은 책을 길게는 칠십여 년이 지난 뒤에 2백 여 질을 반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다 더 정밀한 추적을 요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남겨둔다. 앞에서 언급한 연보에는 1 萬件을 廣布하였다는 언급도 있다. 이는 반사된 수치가 아니라 판각된 목판에서 개인이 인출해간 숫자를 개략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21) 李光葵, 靑莊館年譜(青莊館全書 卷71 年譜下)

22) 김남기, “朱書百選 해제,” 朱書百選·雅誦(서울 : 서울대규장각, 2000).

IV. 刊印 參與者 論賞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계자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論功行賞이 있게 마련이다. 조선시대 정부기록물을 보다보면 이와 같은 논공행상에 관한 기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앞에서 검토한 『奎章全韻』도 인쇄가 끝나고 이를 반포하던 날에 論賞이 있었다. 이에 관한 기사는 『內閣日曆』에 나타나 있다.²³⁾

이 책의 別單 記事에 의하면 인쇄에 동원된 인원을 담당한 업무별로 나누어서 시상내역을 기록하였는데, 모두 59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를 담당업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監印閣臣·檢書官·看役·員役·繕寫·畫員·計士·唱準·冊粧諸員·印出匠·使喚·刻手·除刻匠·小木匠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담당임무별로 시상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 인쇄의 총책임자인 監印 閣臣 李晚秀는 大鹿皮 1장을 받았고, 檢書官 李光葵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奎章全韻』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이덕무의 아들로서 부친이 서거한 후 이 책의 교정과 출간을 담당한 최고의 공로자이다. 그는 이 공로로 六品職으로 승진하였다. 看役監官柳明杓는 邊將에 임명되었으며, 彙書吏 劉相祐와 朴允은 自願에 따라 免賤의 은전을 받았다. 使令 1名에게는 광목과 베 각 1필을 내려주었고, 房直 1名은 광목 1필을, 軍士 2名에게는 각기 베 1필씩을 내려주었다. 繕寫를 담당한 寫字官 李命藝·李垣·趙元魯 3인은 加資를 받았다. 그리고 畵員인 李思集과 計士 洪勉壽는 담당관청에 지시하여 高品의 녹을 받게 하였다. 이외에 唱準인 趙穎은 衛將으로 임용하고, 金鎮漢等 8人과 冊粧諸員 金仁大等 13人, 方外冊匠 洪仁玉等 3名, 印出匠 崔福漢等 6名과 方外印出匠 李鳳仁等 7名, 使喚軍 1名은 該曹의 米布를 등급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지급하였다. 刻手인 劉澤龍等 7명과 除刻匠 1名·小木匠 1名·使喚軍 1名은 該曹에 지시하여 刻手는 각각 從優施賞토록 하였고, 그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 시상하였다.

V. 結論

앞에서 書籍의 頒賜節次와 『奎章全韻』의 頒賜記를 중심으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현존하는 『奎章閣志』 3本에 수록된 頒賜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조선후기의 書

23) 註15)참조,

籍頒賜의 절차는 頒賜記의 確定, 命除의 書寫, 閣臣의 着唧 및 安寶, 도서의 배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된 책은 內閣의 直院인 摄文院에서 반사해야 할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朝臣의 職姓名을 열서한 자료를 만든 다음, 司卷(閣屬官)을 통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 이 단계에서 奉安件 · 進獻件 · 頒賜件 별로 수요 부수가 확정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 앞에서 언급한 頒賜記이다. 반사제도가 正祖代에 시작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端宗實錄』에 수록된 성삼문의 언급에 보이는 頒賜記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렇게 頒賜記가 확정되면 檢書官이 第1卷의 앞머리에 某年月日 宣賜某官某某書某件 命除謝恩 提學或直提學 臣姓押이라 쓴다. 『奎章全韻』의 반사기에는 이 작업을 맡은 사람을 命除를 쓴 사람이라는 뜻에서 命除 書寫人이라 칭하고 있다. 이는 命除謝恩을 줄여서 命除라고 한 것이다. 그동안 內賜記로 불려온 반사문의 호칭이 命除였으며, 이의 書寫는 일반적으로는 檢書官이나누어 담당하며 이 책의 경우와 같이 반사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抄啓文臣과 검서관의 자체들까지 동원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셋째, 命除의 書寫가 끝나면 閣臣은 着唧하고 해당하는 御寶 즉 同文之寶 또는 奎章之寶등을 請出하여 첫 째 版의 첫 째 줄에 한 글자 높이를 낮추어 御寶를 찍어서 반사한다.

넷째, 책의 전달방법은 서울에 있는 신하는 모두 본원에 와서 직접 수령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신하의 경우에는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거나 騎撥 편에 下送한다. 다만 閣吏가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명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전달한다.

2. 서적의 반사는 印出한 시기와 가까운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奎章全韻』의 경우 印出하여 進上한 건수의 근 70%에 이르는 책을 반사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그 이후의 頒賜本에 쓰였을 命除와의 間隙을 생각할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3. 頒賜對象은 『奎章全韻』의 경우 頒賜敎書에는 內外閣 · 玉堂 · 藏書閣 · 尊經閣 · 政院 · 禮曹 · 起居注室 · 五處史庫 · 四學에 分藏하고 時原任大臣 · 閣臣 · 卿宰 · 侍從 · 各邑鄉校 · 賦額書院에 分頒하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頒賜記에 그 대상을 四都 · 八道鄉校秩 · 賦額書院秩 · 各司上 · 四都 · 八道營上秩 · 朝臣頒賜秩로 나누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반사 대상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당시 地方儒林의 핵심적 근거지인 書院의 경우 263개 소의 賦額書院이 郡縣별로 열거되어 있어서 각 지역별로 교육과 학술의 중심지역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4. 『奎章全韻』의 경우 頒賜의 규모는 전체 1,484건이며, 그 중 鄉校와 賦額書院 및 各司上 등 공공적인 반사가 678건이고, 朝臣들 개인에게 반사한 것이 806건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嶺壯紙 · 完壯紙 · 卷冊紙 등 질이 좋은 종이에 인쇄한 책들은 奎章閣을 비롯한 各司上 · 四都와 八道에 奉安 또는 分藏하였고, 개인에게 반사한 경우는 책을 편간하는데 직접 간여한 閣臣이나 檢書官, 校正堂上 등에게 그 일부가 반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의 규모는

『奎章全韻』이 과거시험에 필수서인 韻書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서적의 반사는 이 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正祖朝의 서적반사 대상과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奎章閣. 『內閣日曆』(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 『奎章閣志』刊本(影印本).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 『奎章閣志』再草本 (影印本).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 『奎章閣志』刊本(影印本). 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承政院. 『承政院日記』第32冊(影印本).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61.

實錄廳. 『魯山君日記』(影印本).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6.

- 『正祖實錄』(影印本),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6.

徐有榘著,洪命憲 校. 『鏤板考』. 京城 : 大同出版社, 1041.

徐有榘. 『林園十六志』(영인본). 서울 : 保景文化社, 1983.

李德懋, 『青莊館全書』(影印本, 韓國文集叢刊 第257-259輯).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2000.

正祖 『奎章全韻』

- 『大典通編』

- 『弘齋全書』(韓國文集叢刊 第262-267輯).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2001.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 제281輯).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2002.

李仁榮. 『淸芬室書目』(영인본). 서울 : 寶蓮閣, 1968.

姜信沈. “韓國韻書研究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을 중심으로.” 成大文學, 제15 · 16輯(1970).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6-8(1969).

정경일. 奎章全韻 研究.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4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도서관학연구, 8(승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1987).

김순희. 奎章全韻의 書誌學的 研究. 서울 : 상명여대대학원, 1988.

千惠鳳. “頒賜本,” 韓國民族大百科事典, 제9책.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沈隅俊. 日本書傳存된 內賜本 · 內賜版式 · 古文書套式研究. 서울: 一志 社, 1990.

姜順愛. “규장각의 圖書頒賜에 대한 研究,” 書誌學報, 創刊號(1990).

安秉禧. “內賜本의 한 研究,” 藏書閣.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中村榮孝. “朝鮮官版の 内賜記と 國王印に 就いて,” 朝鮮學報, 25(朝鮮學會, 1962).